

# 2020년도 제10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자: 2020. 6. 16.(화요일)
- 방 법: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김경숙 위원(분과위원장), 박성호 위원, 박정인 위원, 오영주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15건(안건번호 제2020-46582호~제2020-46681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주요내용

- A 위원: 본 심의는 최신 대중가요 음원파일의 불법복제물에 해당하고 복제 전송자는 작곡가 작사가 실연자 등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또한 하나의 게시물에서 다수의 음원파일 압축파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이는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 매우 적합하므로 가결의견임.

- B 위원: 금번 심의안건은 최신 대중가요 음원파일의 불법복제물에 해당하고, 복제 전송자는 작곡가, 작사가, 실연자 등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하나의 게시물에서 최근 인기 있는 다수의 음원파일 압축파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 제133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본 심의대상 제2020-46582호~46681호(순번 1번~100번)는 13개의 상업용 웹하드형 온라인서비스에 이용자들이 게시한 115개의 최신 인기곡들임. 이들 최신 음악 복제물들은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해당함. 그러나 게시된 음악복제물들은 복제 전송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들이 영리목적의 온라인서비스에 불법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보여지며, 그 결과 저작권자가 얻어야 할 경제적 수익을 박탈함으로써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제133조의3에 근거하여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는 측면에

서 복제 전송의 중단과 삭제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다만,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이 타당할 것임.

- D 위원: 금번 심의안건들은 모두 음악콘텐츠의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사안들로서, 예컨대 (음악) 아로하 (가수 : 조정석), (음악) My Love (가수 : 거미), (음악) Memories (가수 : Maroon 5), (음악) 추억으로 가는 당신 (가수 : 영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번 불법 복제 전송된 음악 콘텐츠들은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020년 제106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6. 16.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박성호

위원 박정인

위원 오영주